

감사보고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2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여 2018년 1월 31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내용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음.

업무추진의 내용과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전 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아라종합사회복지관>

1. 사업 목표의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 반환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필요

자기성장프로그램, 어르신정보화교육, 사례관리 워크숍 등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대비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경로식당 운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제주시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반환금이 발생함. 복지관에서는 참여자 발굴 및 확보를 통하여 사업의 적합한 목표 설정과 결과 목표 달성, 신중한 예산 계획 및 집행으로 보조금 반환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비품관리로 철저를 기할 것.

지난 2017년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수기로 작성된 비품관리대장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를 권면한 바,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완전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비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지적함.

3. 개인별 외출 및 조퇴 기록대장 작성에 사유 또는 목적 명시

복지관에서는 직원이 외출 및 조퇴를 할 경우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 외출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이에 외출의 사유와 목적을 명시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자료 작성에 대한 누락방지를 지적함.

4.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복무규정 개정 필요

직원의 기본적인 근로생활보장 및 복지향상과 실질적인 지위를 보호하고 근로 환경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된 복무규정을 현실성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관련법의 2013년 이후 개정사항들을 검토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산하시설이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니 법인 차원의 검토를 요청함.

2018년 1월 31일

감 사

고 두

감 사

고 경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입회인부장권미

회계김지숙